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181 호
2017년9월22일(금)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7-267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1877호 도로지정 공고(남면 우학리 707-2번지) /6
- 여수시 공고 제2017-1885호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입법예고 /7
- 여수시 공고 제2017-1887호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11
- 여수시 공고 제2017-1888호 여수시 지구토지구획정리 분담금부과 징수조례 폐지 /15
- 여수시 공고 제2017-1889호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폐지 /19

회 관									
--------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1. 입산통제 기간 : 2017. 11. 1. ~ 2017. 5. 15.
2.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 입 산 통 제 : 10개산 2,351ha
 - 등산로 폐쇄 : 4개노선 6.5km
4. 유의사항
 -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산 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10(20개소)				1,718필지	2,351.2	
봉황산	여수시	돌산	신복리	산75외 177필지	160.8	
황새봉	여수시	소라	봉두리	산205외 70필지	190.6	
수암산	여수시	율촌	가장리	산4외 39필지	145.1	
수암산	여수시	율촌	취적리	산220외 21필지	103.5	
고봉산	여수시	화양	화동리	산264외 46필지	87.3	
고봉산	여수시	화양	이목리	산349-1외 23필지	24.4	
봉화산	여수시	화양	장수리	산172외 35필지	83.4	
비봉산	여수시	화양	옥적리	산142외 114필지	204.9	
비봉산	여수시	화양	창무리	산58-11외 17필지	63.5	
비봉산	여수시	화양	용주리	산220외 8필지	32.9	
비봉산	여수시	화양	이천리	산46-1외 19필지	21.7	
비봉산	여수시	화양	이목리	산376-5외 13필지	22.7	
전봉산	여수시	주삼		산1-1외 42필지	53.4	
전봉산	여수시	봉계		산25외 6필지	41.1	
가마봉	여수시	소라	대포리	산40외 197필지	340.0	
서이산	여수시	화양	이목리	산1외 395필지	253.7	
서이산	여수시	화양	서촌리	산103외 131필지	139.3	
제석산	여수시	신덕		산1외 23필지	40.4	
제석산	여수시	상암		산167외 54필지	49.4	
제석산	여수시	낙포		산12외 268필지	293.1	

□ 등산로폐쇄 지정현황

산 명	소 재 지			구 간	거리 (km)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2				4개 구간	6.5	
현천뒷산	여수시	소라	현천	국사암→정상	2.0	
	여수시	소라	현천	국사암→약수터→정상		
부 암 산	여수시	오천		호명고개→정상	4.5	
	여수시	신덕		신덕→정상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남면 우학리 707-2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 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50.4m	2.5m	126m ²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남면 우학리	707-2 번지	50.4m	2.5m	126m ²	“	
이 하 빈 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9. 21.

여 수 시 장

공 고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2000.1.28)되고, 여수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연등·광무)이 완료되어 독립회계로서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집행잔액은 이 조례 시행 후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

3. 폐지 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7. 9. 22. ~ 10. 11.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1)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2) 전 화 : 061)659-4004, 팩스 : 659-5833

3) 이메일 : yoon7113@korea.kr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안)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채비지 및 집행잔액은 이 조례 시행 후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공 고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 (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2000.1.28)되고 여수시 도시 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여서·문수·오림·미평·둔덕동)이 1986년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폐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폐지 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7. 9. 22. ~ 10. 11.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1)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2) 전 화 : 061)659-4004, 팩스 : 659-5833

3) 이메일 : yoon7113@korea.kr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에 관한 조례 폐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폐지 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7. 9. 22. ~ 10. 11.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1)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2) 전 화 : 061)659-4004, 팩스 : 659-5833

3) 이메일 : yoon7113@korea.kr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규칙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규칙 폐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폐지 규칙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7. 9. 22. ~ 10. 11.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1)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2) 전 화 : 061)659-4004, 팩스 : 659-5833

3) 이메일 : yoon7113@korea.kr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주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여수시 도시계획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